

무역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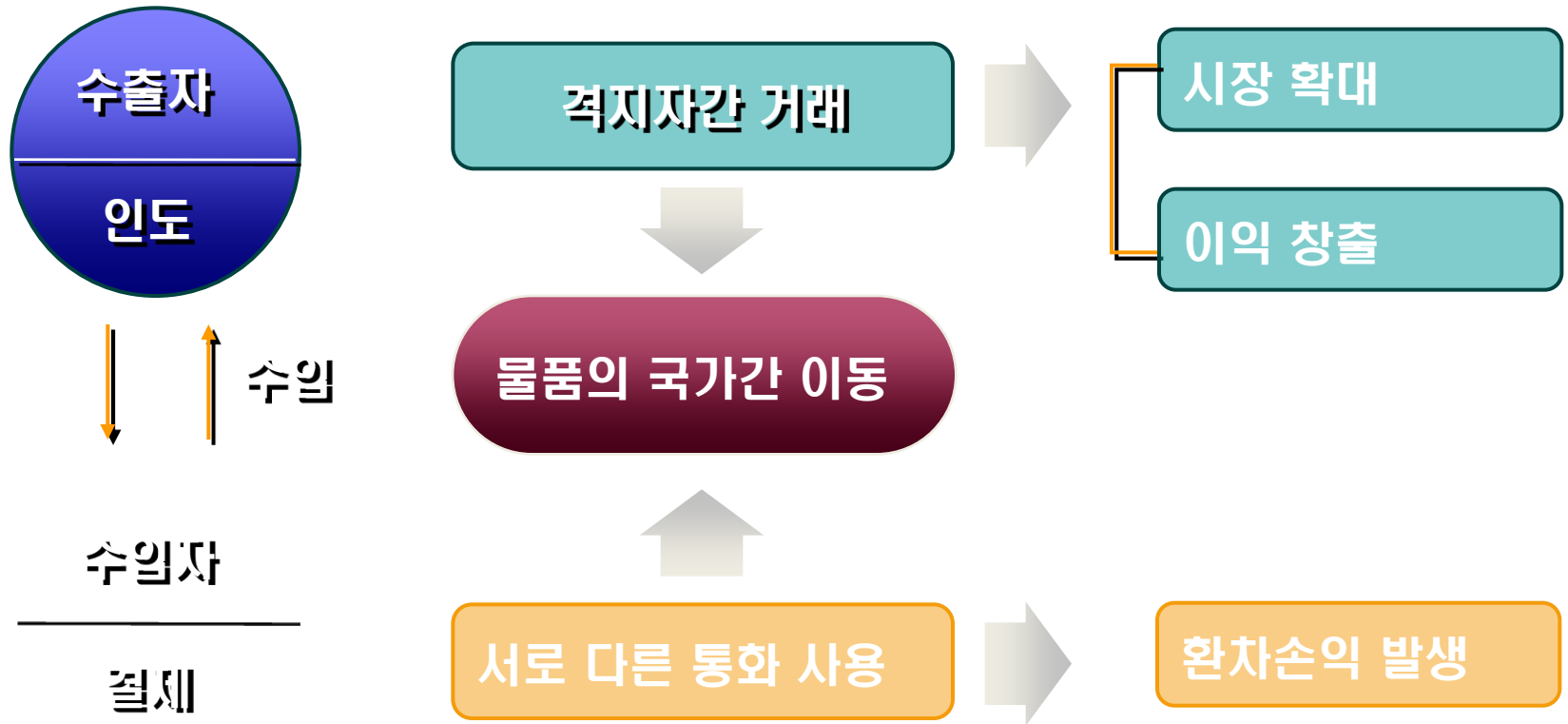


제1장 무역일반론



무역거래의 의의

무역계약은 국제간의 상거래로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환계약 등의 부수적인 거래가 다수 복합적으로 체결



무역의 종류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그것을 일부 가공하거나 또는 원형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여 무역 차익을 획득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중계무역은 일종의 재수출의 형태로 주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계무역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금결제는 별도 계약에 따라서 중계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지불하고 수입업자에게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2)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transit trade)은 수출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제3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통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때 제3국은 이에 따른 운임, 보험료, 노임, 통과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3)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과 수입에 따른 양 당사국 외에 제3자(국)이 끼어들어 수출국과 수입국을 중개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물품과 결제는 수출입국간에 이루어지고 제3국은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받게된다. 즉,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 직접적인 수출입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무역 형태이다.

4)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우회무역(round-about trade)은 무역거래에서 외환 통제가 심한 경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외환 통제가 없는 제3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형태이다.

5) 스위치무역(swich trade)

모든 거래과정은 정상적으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행하지만 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업자가 개입되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스위치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무역 형태는 수출국, 수입국, 제3국 모두 수출이나 수입이 초과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무역이며 여기서 제3국의 업자를 swicher라고 부른다.

무역의 종류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계약서 작성	하나의 계약	하나의 계약	두 개의 별도 계약
신용장 발행	×	Back to Back L/C Escrow L/C Tomas L/C 특수신용장 사용	두 개의 일반신용장 발행
환거래 수반	×	○ (당사자간 합의된 통화로 결제)	○ (당사자간 합의된 통화로 결제)
대응수입 이행기간	동시에 물품교 환	통상 3년 이내	통상 5년 이내
대응수입의무 제3국 이전	×	○	○

무역의 종류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1)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 수탁판매수입(Import on Indent)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3)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무역의 종류

(5) 임대수출

임대(사용임대를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6) 임차수입

임차(사용임차를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7) 연계무역(Counter trade)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8)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무역의 종류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1)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Export Trade)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 수탁판매수입(Import on Indent)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3)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4)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Trust)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무역의 종류

(9)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으로서 제3국도착수입이라고도 한다.

(10)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므로 현지인도 방식수출이라고도 한다.

(11) 무환수출입

무환수출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수출입 절차

수출입절차

